

1. 개정이유

해당 법령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

2. 주요내용

가. “○○제도(정책)의 도입(안 제○조)” 또는 “○○제도의 폐지(현행 제○조 삭제)” 등

1) “--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음.” 또는 “현행 ---는 ---하여 --한 문제점이 있음.” 등으로 표현

* 1) 항목의 기재방법

- 대통령지시, 정책방향의 변경, 상황변동, 특정 사건의 발생 등 해당 제도(정책) 도입의 계기가 된 사항 기재
- 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련 판례·결정례의 요약, 통계자료 등 현황자료 인용, 특정사건의 경위, 사례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요약하여 활용

2) “----하던 것을 ----하도록 함” 또는 “---을 내용으로 하는 -- 제도를 도입함.” 등

* 2) 항목의 기재방법

- 해당 제도(정책)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후를 대비하도록 하고, 새로 도입하는 경우 그 제도의 내용을 기술

3) ---하게 됨에 따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3) 항목의 기재방법

- 종전 제도의 변경 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서술적으로 설명하거나 통계수치 또는 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설명

나. ○○제도(정책)의 도입(안 제○조)

“-----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던 것을 -----하도록 함.”

* 내용에 따라 가. 나. 다. 등 세부항목으로 나누지 않고 작성 가능. 그러나 그 경우에도 제목(“○○제도의 도입”)은 내용과 구분하여 기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의17서식에 따르고,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는 별지 제1호의10 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의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기록사항을 정정·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월일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의10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입(재등록 포함) 신고 사후확인용 자료 []주민등록(신규등록)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 번호		신고일		출력일	
세대주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남/여)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입자 또는 주민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남/여)	거주 여부 확인	
				[]거주	[]비거주
				[]거주	[]비거주
				[]거주	[]비거주
				[]거주	[]비거주
				[]거주	[]비거주
				[]거주	[]비거주
				[]거주	[]비거주

확인자 의견란

(이장·통장 확인경위 및 의견진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전입·주민등록 신고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대주(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이장·통장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이·통장 사후확인 사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자료 정정 동의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의 기록사항을 정정하는데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되며,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 공무원 확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유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장·통장의 정확한 사후확인이 허위 전입신고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 세대주(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 의견란을 작성해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에 대해 신고인이 층수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사후확인 시 동 번호 및 호수를 확인하여 확인자 의견란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 내용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
개인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법인·단체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용도 및 목적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제출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 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 열람: 1건 1회 300원 - 교부: 1통 400원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신청인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입증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500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합니다)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위 신청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자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위임한 자 (법인·단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유의 사항

1. ‘서명 또는 인’ 란에는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서명을 할 때에는 자필로 한글 성명을 써야 합니다.
2.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법인·단체 신청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란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사용 인감을 포함합니다)을 찍습니다.
4.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대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5.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의 위임은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계약자 또는 매매계약자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받아 신청하는 자는 위임장과 본인 및 위임한자의 신분증명서(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말합니다)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 또는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7. 확인하려는 전입세대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8.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는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이 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세대주 및 동거인 여부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신고사항의 사후확인용 자료)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는 별지 제1호 의10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2(신고사항의 사후확인용 자료)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의17서식에 따르고,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는 별지 제1호 의10 서식에 따른다.
<신 설>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 인의 동의를 받아 영 제9조제5 항에 따른 기록사항을 정정·변 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와 연월일 및 관계공무원의 성 명을 기록하여야 한다.